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79호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경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
환경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pooh72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제3호”를 “제3호는 100분의 80으로, 제4호”로 한다.

제1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점용료 및 사용료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며, <u>제3호</u>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3. (생략)</p>	<p>제15조(점용료 및 사용료 경감) ----- ----- ----- ---- <u>제3호는 100분의 80으로, 제4호</u>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u>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u></p> <p>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2.7.17.]